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3** | 2025.12.29 (2025.12.22~2025.12.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 등 16인)**」 ,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31인)**」 ,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최형두의원 등 10인)**」 ,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정보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반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사청문특위>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 기본방향 발표(산업통상부) ..... 7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 8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0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 11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기획재정부) ..... 12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2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 1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 1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3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 14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8인) .....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 19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                          | 19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3인) .....                         | 20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       | 20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                          | 20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 등 10인) .....                    | 21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의원 등 13인) .....                  | 21 |
| •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의원 등 16인) .....          | 22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                            | 22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31인) .....                   | 23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              | 23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 | 24 |
| •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최형두의원 등 10인)      | 24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의원 등 17인) .....                           | 25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 25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0인) .....       | 26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                            | 26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                | 27 |
| •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 27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                         | 28 |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1.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 [소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2. 10. - 2025. 12. 23.)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산업통상부 | <b>「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 기본방향 발표</b><br>- 3개 분야(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 3개 기능(생산·소비·회수)<br>에서 생태계 활성화 | 2025-12-23 |
|-------|-------------------------------------------------------------------------------------------------|------------|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음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힘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임.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

①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 ②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 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 ③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26.1월)**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임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

①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 ②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 「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26년 상반기)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오늘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발표**

-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포함

**2025-12-2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하였음

\* 참여부처(18개) : 기후부, 국조실, 국토부, 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행안부, 국가유산청, 금융위,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 기반시설 혁신**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강화할 예정임. 또한,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

홍수·가뭄에 대비하여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軍)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

**②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 구축**

최근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할 계획

기후적응협의체(기후부-산업부 합동)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할 예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이차보전을 추진하여 기후테크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

### ③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확대(누적 100곳)하여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 2026-01-01 시행 예정 |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 2026-01-01 시행 예정 |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
|-------|------------|------------------|
| 기획재정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2026-01-01 시행 예정 |
|-------|------------|------------------|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26-04-01 시행 예정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쉐련·파이프담배·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6-04-24 시행 예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026-12-24 시행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기획재정부 | <a href="#">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a> | 2025.12.24.<br>~2026.01.12. |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전화: 044-215-4612, 팩스: 044-215-8099)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a href="#">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 | 2025.12.24.<br>~2026.02.02. |
|----------|-------------------------------------------------------|-----------------------------|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및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전화: 044-201-7427, 팩스: 044-201-7420)

|       |                                   |                             |
|-------|-----------------------------------|-----------------------------|
| 지식재산처 | <a href="#">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a> | 2025.12.22.<br>~2026.02.02. |
|-------|-----------------------------------|-----------------------------|

늦은 심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전화: 042-481-5400, 팩스: 042-472-4743)

## 지식재산처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2.22.  
~2026.02.02.

늦은 심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류의 방문수령 장소 표기를 일원화하여 출원인의 혼란을 방지하며,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고, 심판청구서 서식을 개선하여 심결 품질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전화: 042-481-5400, 팩스: 042-472-4743)

## 금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24.  
~2026.02.02.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 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함. 현행 법령상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 중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함

### 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움. 유한회사 사원지분은 성질상 양도성이 인정되는 재산임에도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책임재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정관에 양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한회사의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특별현금화 등 경매 또는 공매로 지분을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정관으로 지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하여 그 자에 대해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56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2025-12-22 발의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를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를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를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를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를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를결 권고 및 동의를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정무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등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를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를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6조)

#### 정무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를 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를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결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37조)**

#### 정무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스스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를 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를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25-12-23 발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 (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

## 정무위원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인이나 친분 관계를 가장하여 신뢰를 쌓은 뒤 비행기 표, 병원비 등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방식이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개인 간의 상거래 분쟁'으로 보아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자금의 교부 또는 출금' 행위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로맨스 스캠에서 주로 발생하는 '송금·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범죄 수익 동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명확히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8인)

2025-12-24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39조의7)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

2025-12-26 발의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8조)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2025-12-24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025-12-26 발의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1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의원 등 13인)

2025-12-22 발의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87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25-12-24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2025-12-26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2025-12-22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 등 16인)

2025-12-22 발의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 전지와 함께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연구개발·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31인)

2025-12-23 발의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분쟁조정·중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기술거래 활성화와 기술유출 위험 증가 등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술제공요구 절차, 비밀유지계약 의무, 보복행위 금지 등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탁·위탁거래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부당 활용 및 반환 불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시정권고의 강제력 부족으로 위반행위 억지력이 미흡하고,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규정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기업의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술침해 대응과 피해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2025-12-23 발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최형두의원 등 10인)**

2025-12-24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2025-12-23 발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한편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모델 학습·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 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59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12-23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중독·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9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0인)

2025-12-24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계획입지 도입, 주민이익공유 확대, 관련 산업 지원과 공급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입지는 지방정부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주거 및 도로 등을 기준으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격거리 규제가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규정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같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잠재 입지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주민참여사업의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2025-12-24 발의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오분류로 인한 보호 공백 해소 및 노동분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2025-12-24 발의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 확립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로서,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우재준의원 등 10  
인)

2025-12-26 발의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2025-12-24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같은 종류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하여 리츠 간 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검사권을 부여하고, 리츠 경영진 등의 이해상충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리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리츠 간 합병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리츠 대형화 및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합병 전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점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과방위    | 전체회의 | 12/30(화) 10:00<br>12/31(수) 10:00 |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
| 인사청문특위 | 전체회의 | 12/29(월) 10:00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br>및<br>세미나 | 12/29(월)<br>13:30 | AI시대 농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대응방안 세미나        | 문대림 의원실          | 의원회관<br>2소회의실  |
|                 | 12/29(월)<br>14:00 |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3회차      | 정동만·곽규택<br>의원실 등 | 의원회관<br>7간담회의실 |
|                 | 12/29(월)<br>14:00 | 새정부의 국제보건 정책 방향과 역할               | 차지호 의원실          | 의원회관<br>8간담회의실 |
|                 | 12/30(화)<br>13:00 | 2025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발표 | 김교흥 의원실 등        | 국회도서관<br>대강당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br>등 | 12/22(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4호(2025-24호)    | 국회도서관 |    |
|          | 12/24(수) | 「Data+」 제24호(2025-24호)       |       |    |
|          | 12/24(수) | 「금주의 서평」 제2025-50호(통권 제759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12/23(화) | 공정거래 | <a href="#">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 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a>                  |
| 12/23(화) | 소송   | <a href="#">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a> |
| 12/26(금) | 금융   | <a href="#">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2. 10. - 2025. 12. 23.)</a>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